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07년 6월 29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7월 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 제137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(2007년 7월 16일) 상 정・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)

□ 제안이유

○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여 태풍·홍수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,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부천시자율 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자율방재단은 단장 1명, 부단장 1명,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, 단장은 단원이 선출하며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하도록 함. (안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)
- 나.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별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, 동방재단의 대표는 소속단원이 선출하도록 함.(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)

- 다.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하고,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함.(안 제3조제7항 및 제8항)
- 라. 단장과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, 단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5조)
- 마.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 등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자율방재협의회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, 의장은 단장이 맡도록함.(안 제7조)
- 바.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, 대응,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를 할동대상으로 하며,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함.(안 제8조)
- 사. 방재단은 단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9조)
- 아. 단장은 매년 활동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,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10조)
- 자. 단장을 포함한 단원은 연 2회 8시간 및 1회 4시간 이상의 방재교육 및 훈 련을 받도록 규정함.(안 제13조 및 제14조)
- 차. 단장은 지원액의 사용내역을 매월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함. (안 제16조)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	질	의			답		변	
0	방재단 구성중 의 차이점은 무		전문조직	0	일반조직은 며 전문조건 전문적인 <i>기</i> 구성토록 하	익은 소방, 기술자격을	저기 기	나스 등
0	방재단 운영을 고 철저한 관리 각되는데 이에	를 하여야	한다고 생	0	방재단원은 회 8시간 1 정되어 있어 철저히 관 고 임무를	회 4시간(1 교육 및 리하겠으며	기상 받도 훈련을 , 자긍심	목 규 통해서 을 갖
0	재난재해시 소 체계를 구축되여 할은?			0	단장은 시의 지시에 의 지시에 으로 활동 연계되어	의거 체계 하게 되며	적이고	조직적
0	각동별 방재단 데 동에는 어떠			0	80여개의 기 제정 시행하 와 강릉시를 에는 통장 하고 있음 단을 구성하	하고 있는데 를 벤치마> 단으로 구 우리시도	테 특히 킹 했는데 성하여 길	할 운영
0	단장 및 부단장	은 유급제인	<u></u> [가?	0	단장 및 부 무급 제임.	나단장 간시	누는 봉사	직으로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130호
의 결	2007. 7. 19
년월일	(제137회)

제출년월일: 2007. 6. 29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○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여 태풍·홍수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,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위한 부천시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자율방재단은 단장 1명, 부단장 1명,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, 단장은 단원이 선출하며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하도록 함.(안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)
- 나.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별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, 동방재단의 대표는 소속단원이 선출하도록함.(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)
- 다.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하고,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 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함.(안 제3조제7항 및 제8항)

- 라. 단장과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, 단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5조)
- 마.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 등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자율 방재협의회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, 의 장은 단장이 맡도록 함.(안 제7조)
- 바.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, 대응,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를 할동대상으로 하며,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 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함.(안 제8조)
- 사. 방재단은 단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9조)
- 아. 단장은 매년 활동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,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10조)
- 자. 단장을 포함한 단원은 연 2회 8시간 및 1회 4시간 이상의 방재교육 및 훈련을 받도록 규정함.(안 제13조 및 제14조)
- 차. 단장은 지원액의 사용내역을 매월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함. (안 제16조)

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6조제1 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천시자율방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명칭 및 설치) 부천시자율방재단(이하 "시방재단"이라 한다)은 부천 시에 설치한다.
- 제3조(조직) ① 시방재단은 단장 1명, 부단장 1명,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단장은 시방재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,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시장이 위촉한다.
 - ③ 부단장 및 간사는 시방재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.
 - ④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별로 자율방재단(이하 "동방재 단"이라 한다)을 구성할 수 있다.
 - ⑤ 동방재단의 대표는(이하 "대표"라 한다) 해당 방재단의 소속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.
 - ⑥ 동방재단원은 시방재단원이 되며, 단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.
 - ⑦ 단원(동방재단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개인단원 및 단체단원으로 구분하며, 단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제2호의2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⑧ 방재단(동방재단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 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.

- ⑨ 단원은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·단체·기업체·기관·학교·종교단체 및 동호회 등으로 한다. 다만,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도단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
- 제4조(직무) ①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.
 - ② 단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 -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.
 -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업무와 회의록 작성, 그 밖에 방재단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한다.
- 제5조(임기) 단장과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단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제6조(해임) 단장은 부단장, 간사, 대표 및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.
 - 1.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
 - 2. 부천시 이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. 다만,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3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4.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- 5.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제7조(자율방재협의회)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, 재난지역에 대한

지원대책 등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자율방재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

- ②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협의회의장은 단장이 된다.
- ③ 협의회의 위원은 동방재단 대표, 방재단에 참여한 단체의 대표, 방재 관련 외부전문가 및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인으로 구성한다.
- ④ 협의회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로 소집할 수 있다.
- ⑤ 의장은 협의회에서 심의·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, 필요 시에는 인력·장비·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- 제8조(임무)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, 대비, 대응 및 복구 등 재난 관 런 전 분야를 활동대상으로 하며,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 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.
 - 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을 구분하여 임무를 부여한다.
 - ③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방재단의 인적·물적 자원 및 장비 등의 상시 관리
 - 2. 자연재난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
 - 3. 재난에 따른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에 대한 홍보
 - 4. 재난 관련 교육·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·훈련 실시
 - 5. 비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, 경보전달, 주민대피유도 및 차량통제

- 6.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,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
- 7. 재난지역의 전기, 통신, 상·하수도 등의 응급복구
- 8.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
- 9. 인력, 장비, 물품 등의 수요 파악
-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 시기·범위·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. 이 경우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- ⑤ 단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편성하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하여 부여할 수 있다.
- 제9조(소집) ① 방재단은 단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시장이 필 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할 수 있다.
 - ② 소집은 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고,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.
 - ③ 단원은 소집에 응하지 않아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. 다만,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.
- 제10조(운영 등)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,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-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에 부천시재난안전대책 본부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할 수 있다. 다만, 합동근무의 시기, 인원, 조건 및 임무 등에 대하여는 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.
- ⑤ 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.
- ⑥ 단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① 시장은 제출된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정하고 필요 시에는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.
- ⑧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식비, 여비, 유류구입비 등 필수경비
- 2. 임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단원의 사망, 부상,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. 다만,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
- 3. 제복, 모자,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
- 4.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
- 5. 단원의 교육·훈련 참가비용, 교육·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·훈련 에 소요되는 비용
- 6.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

- 7.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
- ⑨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11조(금지행위)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
 - 2.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
 - 3.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
 - 4.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
- 제12조(출입증)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할 때에는 출입 증을 소지하여야 하며,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.
- 제13조(교육) ① 교육은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단장, 부단장, 간사, 대표 및 단원은 연간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.
 - ③ 단장은 연간교육 중에서 1회 4시간 이상을 전문기관(민간기관을 포함한다)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.
 -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.

- 제14조(훈련) ① 훈련은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 -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중앙지원단 자문) 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·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의 위원에게 자문을 받았을 때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6조(감독)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한다. 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조례의 폐지) 「부천시수방단운영조례」는 폐지한다.

위 촉 장

주 소:

성 명:

귀하를 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66조 및 「부천시 자율방 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라 부천시자율방재단의 단장으로 위촉합니다.

년 월 일

부 천 시 장(직인)

부천시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(개인)								
등록번호:								
성 명	(성별)	연 령		혈액형				
주 소				반전화 대전화				
자 격 증 또는 기능]가능여부]허종류)	,				
재 난 현장경험	예) ○○재난현	 ※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 기록 예) ○○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, 이재민 구호, 차량통 제, 명구조, 장비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						
희 망 활동내용	※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							
※ 재난	〈특이사항〉 ※ 재난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재							
위 본인은 부천시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여 이에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.								
년 월 일								
	가입희망자: (인)							
부천시자율방재단장 귀하								

부천시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(단체)

등록번호:

단 체 명			대 3	포 자	(☎ 휴대전화:)	
주 소					대표전회	-
담 당 자	(☎휴대전화:)	부서	러명		
인 원	남: 명	여:	i: 명 총		인원	명
장 비	장비명(규격) : 대	장비명(:	(규격) 대	장비명(규격) : 대		장비명(규격) : 대
지원가능	남: 명 여: 명	장비(- :	규격) 대	장비 :	l(규격) 대	장비(규격) : 대
전문분야	※ 단체의 성격 기록 예) 인명구조, 이재민 구호, 장비지원, 차량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					
활동희망 분 야	※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 기록					

〈특이사항〉

※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

위 본 단체는 부천시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여 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대 표: (인)

부천시자율방재단장 귀하

가입희망 회원명부									
단체	단체명:								
연번	성 명	성별	연령	자 격 증 및 기능	운전가능 여 부	혈액형	비고		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

		활	동	확	인	서		
성 명			(인)		등록번	호	※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등록번호 기재	
	사 유	* 00	태풍, 〇	O지 '	역 집중	들호우,	○○지역 설해 등	
	방 법	※ 인력	, 장비 등	등 활	동방법	기재		
	시 간	년	월 일	부터	년	월	일까지(시간)	
활동내용	장 소	* 00	동 일원	등으	로 지역	벽 기지	A	
	내 용		내용을 ○지역) ○마을) ○지역	사전 차량	예찰 () 통제, (0시간 00시간		
〈건의사항〉								
※ 활동	※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록							

확인자 직위: 성명: (인)

본인은 부천시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위와 같이 활동을 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부천시자율방재단장 귀하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

「주」확인자는 동의 대표,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임.

단원 활동현황 총괄표								
등록 번호	성 명	활 동 횟 수	상 황 시 간	비고				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

「주」작성시 유의사항

- 1. 등록번호: 개인은 별지 제2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하고, 단체는 별지 제2호의2서 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함.(예, 10-1)
- 2. 횟수 및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하고,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호글 또는 EXCEL 등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.
- 3.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함.

'ㅇㅇ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〈부천시자율방재단〉 주 요 내 용 비고 월별

「주」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하고 부천시안전관리계획과 연계 작성

<u>출 입 증</u>





